

"Final" VAT regime <sup>P1</sup>  
VAT on self-  
construction activity <sup>P2</sup>  
VAT on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up>P3</sup>  
VAT on the delivery of  
used motor vehicles <sup>P4</sup>  
VAT on the delivery of  
insurance agent  
services, insurance  
brokerage services,  
and reinsurance  
brokerage services <sup>P4</sup>  
VAT on certain taxable  
services <sup>P5</sup>

## 완납적 부가세 제도 "Final" VAT regime

HPP 법 <sup>1</sup>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한 것 외에도 완납적 부가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MoF)는 HPP 법의 9A 조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해당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완납적 부가세 제도는 현행 VAT 세율에 지정된 백분율을 곱하여 "최종" VAT 세율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완납적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에 대해서는 관련된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동 제도에 따른 모든 재화 및 용역(보험 대리인/보험 중개/재보험 중개 서비스 제외)은 VAT 부과 기준("Dasar Pengenaan Pajak/DPP Nilai Lain")으로 "기타 가액(Other Value)"을 사용하였습니다.

동 TaxFlash 에 명시된 완납적 부가세 제도에 따른 "최종" VAT 세율은 11%의 일반적인 VAT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 부가세율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될 12% 세율로 인상된 이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기 표와 같이 "Final" VAT 세율과 함께 해당 재화 및 용역의 범주를 요약하였습니다:

<sup>1</sup> Law No.7 Year 2021 regarding Harmonisation of Tax Regulations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HPP*)

No.	재화와 용역의 범위	Final VAT rate	
		특정 %	유효세율*
1	자가 공사 활동 Self-construction activity	20%	2.2%
2	특정 농산물의 공급	10%	1.1%
3	중고차의 공급	10%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대리인 서비스</li> <li>보험/재보험 중개 서비스</li> </ul>	10% 20%	1.1% 2.2%
5	하기의 특정 용역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 배달 서비스</li> <li>여행사 또는 여행패키지 서비스</li> <li>화물 운송 서비스(물류비 포함)</li> <li>종교적 여행 서비스 (종교와 무관한 지역으로 여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적인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li> <li>✓ 종교적인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li> </ul> </li> <li>바우처를 통한 마케팅 서비스</li> <li>바우처 배포 관련 거래 결제 서비스</li> <li>고객 충성도/보상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li> </ul>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마진이 없는 것	10% 10% 10% 10% 5% 10%	1.1% 1.1% 1.1% 1.1% 0.55% 1.1%

\*현행 VAT 세율 11%에 기준함

완납적 부가세제도에 따른 기타 다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자가 공사 활동에 따른 VAT

자가 건설 활동에 대한 "Final" VAT는 PMK-61<sup>2</su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가 건설 활동의 범위

PMK-61은 "자가 건설 활동"의 범주를 확장하여 **새로운 건물과 오래된 건물의 건설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해당 활동은 a) 개인 또는 법인의 일반 사업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고, b) 결과물이 자체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자가 건설활동의 범위에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해 다른 당사자가 수행하는 건물 시공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 건설활동을 제공하는 상대방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 활동에 대한 VAT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sup>2</sup> MoF Regulation No.61/PMK.03/2022 (PMK-61)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1 revokes PMK-163.

"건물"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a) 주요 구조물은 목재, 콘크리트, 벽돌, 강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구성됨
- b)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
- c)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이전 규정(PMK-163<sup>3</sup>)에 따라 자체 건설 활동은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수행하거나 별개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기간 간의 차이가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PMK-61은 기간 차이가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활동은 별도의 건물 건설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발생한 총 건설비용(토지 비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및 납부의무

개인 또는 법인은 각자가 건설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VAT를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하기와 같은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a) VAT 과세법인(Pengusaha Kena Pajak/PKP)인 경우 월별 VAT 신고서 제출, 또는
- b) PKP가 아닌 경우 VAT 납부 완료 시 관련 신고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됨

VAT 납부 고지서는 VAT 인보이스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입부가세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근거로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과 규정

PMK-61은 2022년 4월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VAT에 대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PMK-61에 따라 계산, 납부 및 신고가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B. 특정 농산품에 대한 VAT

특정 농산품에 대한 VAT는 PMK-64<sup>4</su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농산품은 이전 규정(PMK-89<sup>5</sup>)에 따르며 PMK-64의 첨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랜테이션, 작물, 관상용 식물, 의약품 및 임업과 관련된 농산품이 포함됩니다(목재 및 비목재 품목 모두 포함).

<sup>3</sup> MoF Regulation No.163/PMK.010/2012 (PMK-163) dated 22 October 2012 and effective from 21 November 2012

<sup>4</sup> MoF Regulation No.64/PMK.03/2022 (PMK-64)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4 revokes PMK-89.

<sup>5</sup> MoF Regulation No.89/PMK.010/2020 (PMK-89) dated and effective from 27 July 2020

법인(Industrial Entity)이 완납적 VAT 제도에 따라 농산물, 플랜테이션 또는 임업 제품에 대한 가공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는 VAT 납세자로 지정되며 판매자로부터 VAT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농산품 공급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입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른 공급자는 VAT 인보이스 발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 완납적 vs 일반 부가세 제도의 선택

DPP Nilai Lain 제도와 마찬가지로 완납적 부가세 제도를 선택하는 PKP 판매자는 완납적 부가세 제도가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첫 번째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 세무서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VAT 부과기준에 대해 "기타 가액(Other Value)"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PKP는 PMK-64에 따라 완납적 부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완납적 부가세 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자는 완납적 부가세 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일반 부가세 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완납적 부가세 제도가 종료된 기간 이후 첫 번째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변경신고 이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C. 중고차 공급에 대한 VAT

중고차 공급에 대한 VAT는 PMK-65<sup>6</su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MK-65에 따라 중고차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PKP는 완납적 부가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부가세법 16D조에 따른 판매목적의 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제도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는 매입부가세의 90%가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될 수 있는 DPP Nilai Lain 처리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또한 이전 규정(PMK-79<sup>7</sup>)과 달리 PKP는 일반 부가세 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는 일반적인 규정을 따릅니다(즉, 공제세액 및 불공제세액 모두 존재).

<sup>6</sup> MoF Regulation No.65/PMK.03/2022 (PMK-65)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5 revokes PMK-79.

<sup>7</sup> MoF Regulation No.79/PMK.03/2010 (PMK-79) dated 5 April 2010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10

## D. 보험대리, 보험중개, 재보험중개 서비스에 대한 VAT

PMK-67<sup>8</sup>은 보험대리인 서비스, 보험중개 서비스 및 재보험중개 서비스(총칭하여 "대리인/중개인") 공급에 대한 완납적 부가세제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설규정으로 이전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일반 부가세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설 규정에 따라 매출 부가세는 기존에 비해 더 적게 과세되지만 일반 부가세 제도에 따라 공제되었던 매입 부가세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VAT 과세표준은 이름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총 수수료 금액입니다. 보험대리인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에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인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VAT 징수자로서 보험사/재보험사의 의무

부가세 납부세액은 동 규정에 따라 "VAT 징수자"로 지정된 보험사/재보험사 (Sharia 포함)가 징수,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수수료에 대해 대리인/중개인으로부터 징수된 VAT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AT 징수자는 다음의 시점에 VAT를 징수해야 합니다.

- a) 보험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점 또는
- b) 보험/재보험 중개인으로부터 프리미엄액 수령 시

VAT 납부는 한 달 이내 발생한 대리인/중개인에 대한 모든 수수료 지급 건에 대해 하나의 세금 납부 전표(Surat Setoran Pajak)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VAT 세금계산서

보험대리인/중개인 서비스에 대한 VAT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형식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a) 보험회사 시스템에서 생성한 수수료 납부전표(계정명세서) – 보험대리인용
- b) 중개인이 발행한 중개 수수료 고지서 - 중개인용.

상기 문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VAT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PKP 대리인/중개인의 이름 및 Tax ID (Nomor Pokok Wajib Pajak)
- b) PKP 시스템에서 생성된 일련 번호 및 문서 날짜;
- c) 수수료 금액;
- d) VAT 세액

VAT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보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말일, 또는
- b) 보험/재보험 중개 서비스 제공 시점

<sup>8</sup> MoF Regulation No.67/PMK.03/2022 (PMK-67)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 E. 특정 과세용역에 대한 VAT

앞서 언급된 표상 기타 "특정" 과세용역 대한 VAT 는 PMK-71<sup>9</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 여행에 대한 1.1%의 "Final" VAT 세율은 비종교적 장소로의 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면 전체 여행 패키지에 대해서는 0.55%가 적용됩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마케팅 서비스, 거래 결제 서비스, 수수료 기반 및 마진이 없는 고객 충성도/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VAT 과세표준은 바우처 판매 가격입니다.

화물운송업자의 용역에서 운임은 용역을 받는 자가 항공기, 선박, 기차 또는 육로를 이용한 운송의 형태에 대해 지불하는 운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취득에 대한 매입부가세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sup>9</sup> MoF Regulation No.71/PMK.03/2022 (PMK-71)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71 revokes:

- a. Article 2 letter j, k and m of MoF Regulation No.121/PMK.03/2015 regarding Other Value for the Tax Imposition Base, dated 25 June 2015 and effective from 1 July 2015;
- b. Article 8 of MoF Regulation No.92/PMK.03/2020 regarding the Criteria of Religious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VAT, dated 23 July 2020 and effective from 22 August 2020;
- c. Article 13(5) letter b and Article 16(4) letter b of MoF Regulation No.6/PMK.03/2021 regarding the Tax Treatment of Sales and Distribution of Prepaid Phone Credit, SIM Card Starter Packs, Electricity Tokens and Vouchers, dated 22 January 2021 and effective from 1 February 2021.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mailto:abdullah.azis@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mailto: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mailto:runi.tusit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mailto:adi.poernom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mailto: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mailto:ryuji.sugawa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mailto:adi.pratik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mailto: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mailto:soeryo.adjie@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mailto: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mailto: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mailto:sujadi.le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mailto:ali.widodo@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mailto:kianwei.chong@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mailto:sukma.alam-c@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mailto:amit.xz.sharma@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mailto:lukman.budiman@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mailto:surendro.supriyadi-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mailto:andrias.hendr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mailto:mardianto.mardianto@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mailto: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mailto: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mailto:margie.margaret@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mailto:sutrisno.ali@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mailto: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mailto:marlina.kamal@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mailto: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mailto: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mailto:nicholas.sugito@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mailto: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v.tjhing.phan@pwc.com](mailto:av.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mailto:nikolas.handradj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mailto: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mailto:brian.arnol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mailto:oki.octabiyan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vatman@pwc.com](mailto:turino.suv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mailto:dexter.pagayon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mailto:omar.abdulkadir@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mailto: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mailto:enna.budim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mailto:otto.sumaryo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mailto: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mailto: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mailto: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mailto:yunita.wahadaniah@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mailto: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mailto:raemon.utama@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mailto: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2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